

2026년 화성시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행사대행 용역

과업지시서

2026. 5.



[기본사회담당관]

2026년 화성시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행사대행 용역 과업지시서

I 과업개요

1 과업목적

- 관내·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·초기 창업자 발굴
 - 초기·예비창업 기업 대상으로 3라운드 오디션 방식의 경진대회 추진 후 최종 선정 기업 대상 시제품 개발비 및 창업공간 지원
- 환경·사회문제 해결 기술기반 창업 경진대회 개최로 소셜벤처 창업문화 확산
 - 아이디어 발표대회, 리빙랩, 해커톤 대회 개최를 통해 참여기업의 환경·사회문제 해결 기술력 강화 기회 부여

2 용역개요

- 용역명: 2026년 화성시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행사대행 용역
- 용역기간: 착수일 ~ 2026. 11. 30.
- 사업예산: 금85,0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- 과업내용: 개별 대회 운영, 참여기업 관리, 대회 홍보 등
 - 총 3회의 개별 대회 운영으로 잠재력 높은 소셜벤처 발굴
 -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3라운드의 대회를 통해 최종 10개 기업 선정
 - 아이디어 고도화 멘토링, 리빙랩, 해커톤 대회 개최를 통해 기술력 강화 기회 부여
- 행사일정



II 과업내용

1 과업핵심사항

- 개별 대회의 목적에 적합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- 오프라인 대회 행사장의 규모, 참여기업 및 심사위원 관리, 운영인력, 안전관리 등과 관련 현장 환경에 맞는 시설과 장비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 계획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함
- 모든 대회의 사전 준비부터 오프라인 대회 진행 시 설치물의 철거까지(원상복구) 책임 있는 관계자가 행사장내 상주하여 행사 전반을 책임 관리 하여야 함
- 대회 진행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

2 과업수행개요

기간	구분	추진내용	비고
착수일 ~ 2026. 6. 30.	행사계획 수립 등	행사 기획 및 프로그램 총괄 구성	
2026. 7. 1.~ 7. 31.	행사홍보	참여 팀(기업) 모집 온라인 홍보 기획 및 진행	
2026. 8. 1. ~11. 6.	서면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정 (예비)기업 관리 및 향후일정 안내 ■ 심사위원 관리 및 향후일정 안내 	
	Round1 발표대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서면평가 통과 (예비)기업 관리 및 O.T. 기획 및 안내 ■ 심사위원 관리 및 안내 ■ 온라인 발표대회 기획 및 운영 	1.O.T.: 오프라인 2.발표대회: 온라인
	Round2 시장성검증 대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Round1 (예비)기업 관리 및 행사 안내 ■ 심사위원 관리 및 안내 ■ 시장성검증 멘토단 기획 및 운영 ■ 오프라인 발표대회 무대 기획 및 행사장 섭외 ■ 오프라인 발표대회 관리 및 진행 	결과발표대회: 오프라인
2026. 11. 7. ~ 11. 30.	결과보고 제출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0개 (예비)기업 관리 및 행사 안내 ■ 심사위원 관리 및 안내 ■ 해커톤 기획 및 운영 - 워크숍 및 숙박시설 대관 무대설치 식사 및 간식 등 ■ 멘토링단 섭외 및 관리 	오프라인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회 결과 스케치 영상 제작 ■ 대회 무대 철거 및 청소 ■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등 	

※ 프로그램 구성 및 세부 내용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일정과 참여기업 수는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3 과업세부내용

① 총괄 기획 및 운영

- 개별 대회의 사전 준비부터 종료 시까지 행사기획·진행·관리 등을 총괄
 - 온라인 플랫폼(화상회의 등) 대여·운영
 - 오프라인 행사 무대 및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
 - 모든 세부 행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진행
- 대회관련 온라인 안내(FAQ) 창구 운영
- 참여기업 모집 홍보 기획 및 추진

② 서면평가

- 최종 선정 30개 기업 대상 추진일정 안내
- 서면심사비(13인) 지급 및 최종선정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

③ Round1(발표대회)

- 오프라인 O.T.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
 -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이해교육 및 행사안내 등을 포함하여 기획
 - 화성산업진흥원 및 유엔아이센터 등 공공시설 대관 우선
 - 행사 현장현수막 제작
 - 참여강사 수당 지급
- 발표대회 기획 및 진행
 -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대여 1식
 - 서면심사비 지급

④ Round2(시장성검증대회)

- 시장성검증대회 기획 및 진행
 - 기업 멘토단 조성 및 운영
 - 오프라인 발표대회를 위한 화성산업진흥원 및 유엔아이센터 등 공공시설 대관 우선
 - 대면심사비(13인) 지급
 - 행사 현장현수막 제작
 - 행사 진행보조요원(주차요원 포함) 4인 이상 배치

- 참여 기업(팀) 인원수 및 심사위원 수에 맞는 다과 및 음료 준비
- 행사진행 영상 및 사진촬영 1식

⑤ Round3(소셜벤처 페스티벌)

○ 해커톤 기획 및 진행

- 1박 2일 프로그램 일정 기획 및 진행
- 행사장 디자인 기획 및 홍보물품 배치(스카시 및 단상, 브로셔, 현수막, 배너 등)
- 행사 무대 기획 및 시스템 구축 1식
- 참여 기업(팀) 및 행사 진행요원 등을 포함한 숙박시설 및 행사장 대관
- 참여 기업(팀) 및 행사 진행요원 등을 위한 식사, 다과 및 음료 준비
- 대면심사비 지급
- 사회적가치 측정관련 전문 멘토 4인 이상 배치
- 행사 전문진행자 1인 배치
- 행사 진행보조요원 4인 이상 배치
- 사전 기업 인터뷰 및 소개영상 제작
- 행사진행 영상 및 사진촬영 1식
- 시상 폼보드 및 상장 제작

○ 청소년 소셜벤처 대회 진행 협조

- 동일 장소 행사 무대 및 시스템 연속 사용
- 행사 전문진행자 1인 및 진행보조요원 4인 연속 사용
- 참여자 등을 위한 다과 및 음료 준비

⑥ 대회결과 대외홍보 등

- 행사 사진 및 영상을 활용한 결과보고 영상 제작 1식
- 대회 만족도 조사 진행
-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

4 과 업 수 행 지 침

1. 과업단계별 보고 일정

가. 착수보고회

-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지시서, 계약서 등을 근거로 과업 수행 계획 및 추진 방향 등을 보고하여야 함

나. 중간보고회

- 생략

다. 최종보고회

- 2026년 11월 30일(화)까지 전체 행사 추진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함

라. 상시 보고

- 과업 수행에 대한 협의 필요 혹은 긴급사항 발생 시 상시 보고하여야 함
- 상황에 따라 서면 보고로 대체할 수 있음

2. 결과물 납품 및 검수

가. 요약 결과보고

- 행사 완료 2일 이내에 참가기업 및 참관객 수 등을 포함하여 요약 보고하여야 함

나. 최종 결과보고

- 행사 완료 3주 이내에 대회 운영 등에 대한 과업 결과보고서 제출
- 제출자료: 최종 결과보고서 10부(증빙자료 포함), 참가자 만족도 조사 설문자료 원본, 참가기업 리스트 및 민원내용 정리, 대회 운영 사진 및 영상원본 파일, 결과 동영상 원본 파일 및 과업 수행 시 제작한 모든 디자인 및 홍보물 원본 파일 등

- ※ 과업 수행 현황에 따라 보고회를 운영하며 주최·주관 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할 수 있음
- ※ 발주처 내·외부 상황에 따라 보고일정 및 개최여부 등이 변경될 수 있음
- ※ 최종 결과보고서 내 수행한 모든 과업 내용, 단계별 업무추진 내용, 당해연도 행사 분석 결과 및 향후 행사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
- ※ 최종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가 수정·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
3. 과업 수행지침

가. 일반사항

- 과업 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,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여야 함
- 수행사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본 사업을 진행해야 함
-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일차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 결정하되,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기로 하며,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

-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·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
- 본 용역 과정에서 수행사는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
-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서류 및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
- 수행사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,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침해로 본 과업 수행에 지장을 줄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함

나. 참여인력

- 수행사는 용역진행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
- 과업 운영·관리 등을 위해 이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
-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때에는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

다. 보안규정

-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 정보,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, 과업완료 후 즉시 파기 및 발주기관의 반환 요구 시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함
-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업무 수행 규칙을 준수하고,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기밀을 유지해야 함
-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,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위반으로 문제 발생 시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

라. 과업변경

-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의 연장 또는 과업 내용의 추가·감소 등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·변경할 수 있음
- 계약 후 과업 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 실정에 따라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으며, 과업 지시 내용 및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함

마. 계약의 해제 및 해지
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
 -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

- 계약서상의 과업 수행 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과업 수행 요청 내용과 실제 과업 수행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
-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
- 기타 과업 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
- 상기 계약 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업체에 대해 일체의 용역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,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수행사는 이를 일체 반환 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
- 악천후나 강풍, 지진, 화재,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 및 수행사 외적인 요인에 의해 행사가 취소 및 중지될 경우 수행사는 실제 지급되고 진행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

바. 손해배상

-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계약당사자는 책임져야 함
 - 발주기관 감독관이 판단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 -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
 -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
- 과업수행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. 다만,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-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

사. 안전보건관리준수
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행사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은 방문 및 관람객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·설치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·보건 관계명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,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
-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

경우 보수·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,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
-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,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

아. 기타사항

-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과업수행자가 제안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자에게 추가로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따라야 함
-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지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함
-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한 의견차이가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간에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름
-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,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줄 수 없음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타 관련법과 각종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함(모든 제작물과 디자인,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분쟁 포함)